



제 1102 호

2013년 4월 12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칙 제82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 2

공 고

- 공고 제2013- 593호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등 16
 록사항 알림
- 공고 제2013- 596호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17
 공고
- 공고 제2013- 598호 2013년 남동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21
 (CCTV) 설치 행정예고
- 공고 제2013- 60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입법예고
- 공고 제2013- 60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일부 33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13- 609호 구월도매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보상계획 열람 공 37
 고
- 공고 제2013- 612호 2013.1.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39
 요령 공고

고 시

- 고시 제2013- 33호 도시관리계획[인천논현(2) 지구단위계획]결정(변 42
 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 제2013- 3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44
 지형도면 고시

회 람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4월 12일

남동구 규칙 제82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하여 「자원봉사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

제3조(직원의 정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고 그 정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필요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조직체계) 센터의 조직체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장은 직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센터장
2.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3. 센터 담당 부서장
4.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인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요구하는 사항

⑥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직원의 임용) ① 직원은 센터장, 운영요원으로 구분한다.

② 센터장은 조례 제9조에 의거 선임하며,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용한다. 다만 운영요원 결원 시 상위 직급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위 직급 인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임용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④ 센터장은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1년에 2회(상,하반기)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⑤ 직원의 신규임용 시 최저연령, 근무상한연령, 당면퇴직,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임기는 조례 제9조제2항을 따른다.

제7조(직원의 보수) ①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센터장은 별정직 5급 상당, 운영요원은 별정직 6급에서 9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최초 임용시 [별표 3]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여 최초 호봉을 정하되 센터장은 15호봉, 6급 운영요원은 12호봉, 7급 이하 운영요원은 10호봉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직원의 호봉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9급에서 5년 이상, 8급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 시 1호봉을 감한다.

④ 직원의 수당은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8조(직원의 복무) ①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징계) ① 센터장은 운영요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은 징계조치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겸직제한 및 직권면직) ①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센터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운영재원) 센터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금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에 후원금 및 수익금

제12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관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는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관리) ① 센터는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센터장은 당해 연도 센터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된 보조금을 검토하여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확정 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확정된 보조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3.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1부
4. 사업실적보고서 1부

제16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센터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공인관리)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장 직인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 직인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장 직인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4]와 같다.
-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봉사활동 실비지급)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센터 위탁

제19조(센터의 위탁)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에서 설립한 법인에 위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전문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2. 자원봉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계획 등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

④ 센터의 정관과 인사, 복무 등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센터 운영 희망자는 [별표6]의 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계약 위반 시 책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수탁기관은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 운영 실적 및 사업경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 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할 경우
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3. 제7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4.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 법인이 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일 때
6. 재정 능력 등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7. 지도감독 및 특별감사 등에 불응할 경우

제20조(위탁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내로 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자원봉사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탁기간 및 재위탁) ①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등을 연장하여 재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수탁기관은 [별표7] 센터 운영 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해당 연도 주요 사업계획 1부
4.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명서류 1부
5.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6.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제2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단체나 법인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운영규정)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인사, 보수, 복무,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내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내 별도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센터 설립,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행한 각종 사무처리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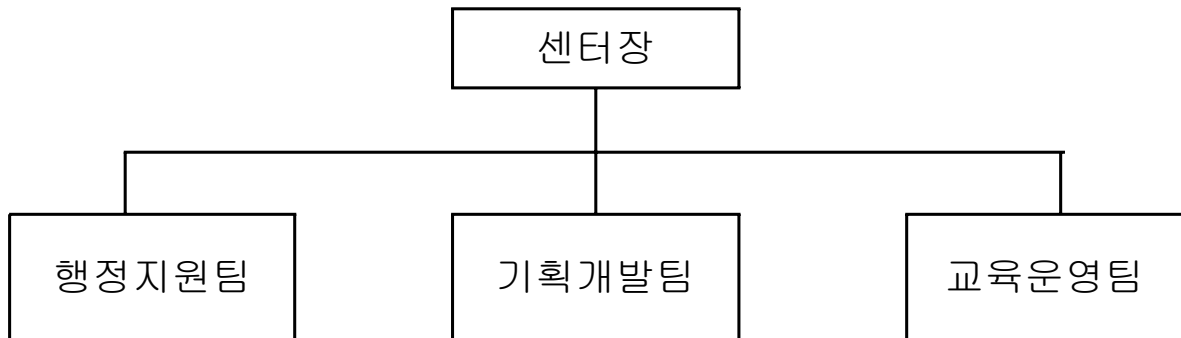
[별표 1]

직원 정원 및 임용 선발 자격(제3조 및 6조 관련)

구 분	인 원	선 발 시 험		자 격 기 준
		1차	2차	
계	7명			
센터장	1명	서류 전형	면 접	남동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소재지를 두고 활동을 한 자로 ○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급	2명	서류 전형	면 접	○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6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소지한 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7급	2명	서류 전형	면 접	○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소지한 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8급	1명	서류 전형	면 접	○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8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소지한 자로 사회복지 분야에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9급	1명	서류 전형	면 접	○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9급 이상 퇴직공무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을 소지한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별표 2]

자원봉사센터 조직체계(제4조 관련)



※ 업무(사무)의 분장은 센터의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조정하며 센터 내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별표 3]

경력인정표

구 분	경력 인정 내용	비 고
100% 적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근무경력 2. 군 복무경력(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 시 및 군·구에서 설치한 자원봉사센터 근무경력	
80% 적용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 외 자원봉사관련 기관 근무경력(「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및 「여성발전기본법」)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 사회단체 임원 경력	

※ 각 경력은 월단위로 계산하여 호봉에 반영

[별표 4]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센터장 직인

2.4cm	
인 천 광 역 시 남동구자원봉사 센 터 장 인	2.4cm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 직인

2.1cm	
인천광역시남동 구자원봉사센터 운 영 위 원 장 인	2.1cm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장 직인

2.1cm	
인천광역시남동 구자원봉사센터 인 사 위 원 장 인	2.1cm

[별표 5]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지급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 센터 비상근 자원봉사자 ○ 남동구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 등록자에 한함.	○ 1일 4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 교 통 비 : 3,000원 이내 - 급 식 비 : 6,000원 이내 - 활동용품비 : 실비보상

[별표 7]

자원봉사센터 운영 재위탁 신청서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를 재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 하				
첨부서류 1.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주요 사업계획 1부 4.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5.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6.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 사본1부 7. 서약서 1부				수수료 없 음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추가하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성을 증대함은 물론,
-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 및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내용에 따라 3개의 장으로 분류 장 신설
(제1장 총칙, 제2장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 제3장 자원봉사센터 위탁)
- 센터 소장의 명칭을 센터장으로 변경 → 명칭변경
- 센터의 대표자를 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 → 회장조항 삭제
- 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이관 → 삭제
- 센터의 조직을 2개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 1개팀 증설 (제4조)
- 직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안 제5조)
- 연2회 직원 근무평정을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 확산 신설 (제6조)
- 직원의 임용 및 보수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규정에서 별정직 공무원 규정으로 변경 수정(제6조 및 7조)
- 징계에 관한 사항 조항 신설 (제9조)
- 겸직제한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 (제10조)
-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규정 마련 신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 인사(징계), 보수, 복무,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센터 별도규정 운영 신설 (제24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5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춘천지방법원(사건번호2012가단109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1항5호에 의거 양도인 신청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 처리 전 양수인에게 2013. 4. 5일까지 소유권이전등록을 완료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 고 명 칭 : 법원판결문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2. 공 고 기 간 : 2013. 4. 8 ~ 4. 22.
3. 공시송달내용
 - 가. 대상차량 : 강원29라79**
 - 나. 양수인(송달불능자)
 - 성명 : 이영래(1953년)
 -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169-**(발한동)
 - 다. 공고내용
 - 양수인(이영래)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최고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3.4.22일까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4.22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7조3항에 의거하여 양수인(이영래)명의로 소유권이 강제 이전됨을 알려드립니다.
4.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제121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1항
5.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 (☎032-453-293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596호

- 남동구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
2013년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시행 공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은퇴를 대비해 자기계발 및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배우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3년 4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신청접수

- 대 상 : 10명 이상의 남동구민으로 구성된 팀
 ※ 베이비부머 세대로 구성된 팀은 선정시 가점 부여
- 신청기간 : 2013. 4. 15(월) ~ 4. 26(금) 업무시간 내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제출
 - 방문신청: 남동구청 6층 평생교육지원과 방문
 - 홈페이지 신청 : 남동구평생학습센터(<http://LLL.namdong.go.kr>)
 - FAX 신청 : 032)453-5899
- 운영방식 : 팀에서 희망하는 평생교육 강좌 신청에 따라 강사파견
- 지원내용 : 팀별 강사로 100만원 범위 내 강좌 (1회성 강좌 제외)
- 강좌분야 :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대비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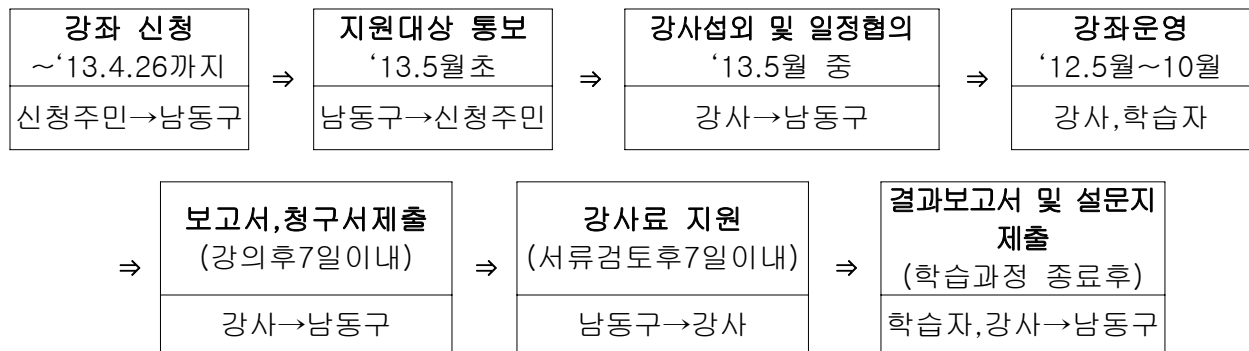
분 야	강의 주제 (예)
사회적응	○ 은퇴 전후 대비 인생 재설계 및 자기정체성 재정립 프로그램 ex)나만의 자서전 쓰기, 인문학 강좌 등
소득유지	○ 직업/학력별 경력경로에 따른 취업, 전직, 창업교육 ex)재취업과 창업을 위한 준비, 외국어교육, 자격증 등
여가향유	○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생산적 여가활동 ex)목공DIY기술, DSLR사진교실, 귀농 귀촌의 이해 등

※ 위 표는 개설된 강좌가 아닌 강좌 신청 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2. 강좌 운영

- 운영기간 : 2013. 5 ~ 10월 (강의 날짜, 시간 등 자율 결정)
- 강의장소: 신청자 희망 장소(남동구 관내), 교육장소 확보 필수
 - 관리사무소, 회의실, 경로당, 작은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 강좌 운영방법
 - 출석부 작성, 강의 사진 기록, 평가 설문 진행 등 강의 관리 철저
 - 출석인원이 50%미만인 경우 지원취소
 - 강사비는 구에서 제공하되, 재료비·교재비는 학습자 부담
- 선정방법 : 프로그램 내용, 학습자 수와 운영 장소 적절성 등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심의 후 접수순에 따라 대상 선정
- 선정발표 : 2013. 5월초

3. 추진 일정



■ 문 의 : 남동구청 평생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453-6053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신청서

[팀명 :]

▶ 신청(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주소	(-) 우편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강좌참여자수	()명 (세부명단은 아래 참여자 명단에 기재)		
▶ 희망강좌			
강좌명			
강좌내용			
강사명	※ 원하는 강사가 있을 경우 강사명 기재 강사명 : 강사 연락처 :		
희망일정	①	☐ 주 회 ☐ 요일 [] ☐ 시간 ()시~ ()시	
	②	☐ 주 회 ☐ 요일 [] ☐ 시간 ()시~ ()시	
교육장소 (주소)			
▶ 신청동기 ※ 선정시 참고하오니 반드시 작성바랍니다.			

▶ 학습자 명단				
번호	학습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2013년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598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안내 및 전문가·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2. 시 행 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3. 설치장소 : 4개소

행정동명	위 치
남촌동	① 남촌동 남촌초등학교 입구(남촌동 556-19)
간석동	② 간석동 홈플러스 앞 석정삼거리(간석동 617-108)
서창동	③ 서창동 서창초등학교 사거리(서창동 565-2)
논현동	④ 고잔동 에코메트로7단지 후문(고잔동 7)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2013. 4. 9 ~ 4. 29)
5.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6.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주차단속팀)로 문의
(☎032-453-2890)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예 고 의 건 제 출 서

1. 행정예고 내용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2. 당 사 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연락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 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60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근거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사항 반영(2013.3.8)
 - 민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3. 주요 개정내용
 - 관수자를 보관자로 용어순화(안 제2조, 제3조)
 - 공인 인영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조문내용 일부 수정(안 제5조 2항 및 3항)
 -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하는 법령 수정 (안 제6조)
 - 별표 및 별지서식 개정 (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까지)
4.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남동구청) / ☎453-2449 FAX 453-569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6. 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사항(2013.3.8)을 반영하고,
- 민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 주요내용

- 관수자를 보관자로 용어순화 (안 제2조 및 제3조)
- 공인 인영의 사전날인 및 인쇄 조문 내용 일부 수정
(안 제5조2항 및 3항)
-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법령 수정 (안 제6조)
- 별표 및 별지서식 개정 (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까지)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및 본문(제1항부터 제2항), 제3조 제목 중 “관수”를 “보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문서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를 “문서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원판 및 제판을 회수하여 문서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한다”를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하며, 인쇄물은 인영매수를 확인 후 사용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서식을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 인 보 관 자

기 관 별	공 인 종 류 별	관 수 자
본 청	☐ 구청장직인 ☐ 민원전용 구청장직인 ☐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직인 ☐ 그 밖의 공인	문서업무주관부서 담당주사 해당업무 담당주사 해당업무 담당주사 해당업무 담당주사
직속기관	☐ 해당 기관장직인 ☐ 그 밖의 공인	서무업무 담당주사 해당업무 담당주사
동	☐ 동장직인 ☐ 동장전용 구청장직인 ☐ 그 밖의 공인	동장이 지정하는 자 동장이 지정하는 자 동장이 지정하는 자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수 신 자

제 목 : 공인 사전날인 신청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수 량		4. 사용예정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 인 명			
6. 비 고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 297mm 백상지 80g/m²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수 신 자

제 목 : 인영인쇄 사용승인 신청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인쇄수량		4. 인쇄업소 및 대표명	
5. 공 인 명		6. 제판규격	원 형 () 축 소 ()
7.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8. 반 납 예 정 일	년 월 일
9. 입 회 자	직 명	성 명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 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공인인계인수부

일시	인계간 시간	인계자			인수자			비고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4호 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 문서명			
공 인 명		인쇄관인규격	

일 자	인 쇄 량 (매)	사 용 량 (매)	사 용 명 세	잔 여 량 (매)	확 인 (서명)

210mm×297mm(백상지 150g/m²)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인의 <u>관수</u> 자 지정) ①----- ----- -----	제2조(공인의 <u>보관</u> 자 지정) ①----- ----- -----
각 기관의 공인별 <u>관수</u> 자는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u>관수</u> 자가 -- ----- 대리자가 <u>관수</u> 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공인별 <u>보관</u> 자는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u>보관</u> 자가 -- ----- 대리자가 <u>보관</u> 하여야 한다.
제3조(공인의 <u>관수</u> 방법) (생략)	제3조(공인의 <u>보관</u> 방법) (현행과 같음)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생 략) ② ----- -----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문서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 ----- ----- -----	<u>문서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u> ③ ----- ----- -----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u>원판 및 제 판을 회수하여 문서업무주관부서의 장에 게 반납하여야 한다.</u> ④ (생 략)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u>원판과 잔 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하며, 인쇄물 은 인영매수를 확인 후 사용한다.</u>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준용규정) ----- 필요한 사항은 「 <u>사무관리규정</u> 」 및 <u>같은 영 시행규칙</u> 을 준용한다.	제6조(준용규정) ----- 필요한 사항은 「 <u>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u> 」 및 <u>같은 영 시행규칙</u> 등을 준 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장 서 정 화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60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 이유 : 각종 공사·용역 및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예산산출 기초의 적정성 검토 분석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사업 금액 변경
 - 3억원 및 2억원을 각각 1억원으로 조정 (안 제3조제1호 각 목)
 - 7천만원을 각각 2천만원으로 조정 (안 제3조제2호 각 목)
 - 2천만원을 1천만으로 조정 (안 제3조제3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감사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실(☎453-6033, FAX: 453-2079, E-mail: kad355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이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 www.namdong.go.kr](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복지예산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점차적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재정난 극복과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의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 각종 공사 용역 및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이전의 예산산출 기초의 적정성 검토 분석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상사업 금액 변경

- 3억원 및 2억원을 각각 1억원으로 조정(안 제3조제1호 각 목)
- 7천만원을 각각 2천만원으로 조정 (안 제3조제2호 각 목)
- 2천만원을 1천만으로 조정 (안 제3조제3호)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약심사 규정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가목 중 “3억원” 을 “1억원”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 중 “2억원” 을 각각 “1억원” 으로 한다.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 중 “7천만” 을 각각 “2천만원” 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2천만원이상의” 을 “1천만원 이상의”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상사업) (생략) 1. (생략)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u>3억원</u> 이상의 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u>2억원</u> 이상의 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 중 추정금액 <u>2억원</u> 이상의 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 중 추정금액 <u>2억원</u> 이상의 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 공사 중 추정금액 <u>2억원</u> 이상의 공사 2. (생략) 가.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u>7천만원</u> 이상의 용역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u>7천만원</u>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학술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u>7천만원</u> 이상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 추정금액 <u>2천만원</u> <u>이상의</u> 물품	제3조(대상사업)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 <u>1억원</u> ----- 나. ----- ----- <u>1억원</u> ----- 다. ----- ----- <u>1억원</u> ----- 라. ----- ----- <u>1억원</u> ----- 마. ----- ----- <u>1억원</u> ----- 2. (현행과 같음) 가. ----- ----- ----- <u>2천만원</u> ----- 나. ----- ----- ----- <u>2천만원</u> ----- 다. ----- ----- <u>2천만원</u> ----- 3. 물품의 제조·구매 : 추정금액 <u>1천만원</u> <u>이상의</u> 물품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609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구월도매시장주차장 건립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구월도매시장주차장건립사업
3. 보상 시기 : 2013. 5월 중(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보상금 지급 및 문의처
 -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6073)
5. 보상 대상 : 구월동 1171-5
6. 보상 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 보상
 - 지장물 즉시 철거 조건으로 지급
 - 보상계약 체결이전에 소멸된 지장물은 보상 불가
7.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8. 열람기간 : 2013. 4. 11 ~ 4. 26.
10. 열람장소 :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11. 기타사항 : 물건조서 등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경제지원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물건조서 첨부)

구월도매시장주차장 부지 토지조서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건축면적(㎡)	소유자	비고
1	남동구 구월동	1171-5	대	131.2	151.83	강창선	
		이 하 여 백					

구월도매시장주차장 부지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1	남동구 구월동	1171-5	토지	대지	131㎡	강창선	
			건물지1층(주택)	연와조	21.69㎡		
			건물1층(주택)	연와조	68.85㎡		
			건물2층(주택)	연와조	61.29㎡		
			보일러실	블럭조	1.0식		
			대문(문주,지붕포함)	철재	1.0식		
			담장	블록	1.0식		
			바닥	콘크리트	1.0식		
			장독대,화단 (소목,화초포함)		1.0식		
			이 하 여 백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612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 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 랐

- 기 간 : 2013년 4월 12일 ~ 5월 1일
- 장 소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및 남동구청 홈페이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2. 의견제출

- 기 간 : 2013년 4월 12일 ~ 5월 1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 제출방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

- ####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6.27>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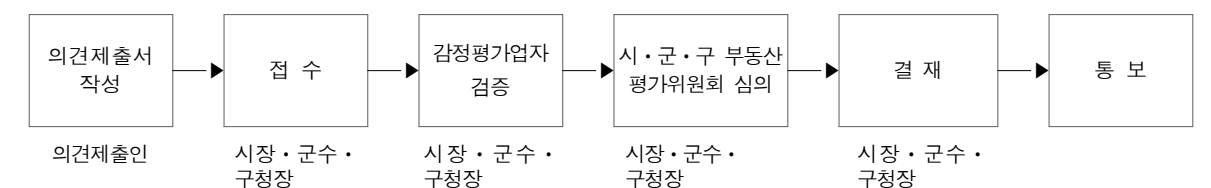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3.1.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 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33호

도시관리계획[인천논현(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인천논현(2)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인천논현(2)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지역·지구의 지정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변 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면 적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98	20	집산	313	6,691.1	대1-13	중1-297	일반 도로	
변경	중로	1	298	20~23	집산	313	6,794.1	대1-13	중1-297	일반 도로	일부 폭원 및 면적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298	중로1-298	· 사업대상지 내 도로 폭원 및 면적 변경 -폭원 : B=20m→23m -면적 : 6,691.9 → 6,794.1㎡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른 가· 감속차로 설치로 인하여 건축 허가 조 건에 명기된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분할획지 도로 편입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가. 기본방향 : 변경없음

나. 용도별 계획 : 변경없음

다. 규모계획 : 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면 적(㎡)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상12	상12	1	논현동 642-1대	4,114.1	4,011.1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고
상12	획지변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반영에 따른 획지변경(103.0㎡ 감소)	-

○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 변경없음

○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3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의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초등학교 (신월)	구월동 612-1번지 일원	13,672	증)84	13,756	2001.6.14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신월 초등학교	◦ 학교 면적 변경 (증 84㎡) 13,672㎡→13,756㎡	◦ 학교용역의 사유지 점유로 학교 면적 변경

3.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